삼 척 시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시 보

선람	기 관 의 장

제975호 2017. 6. 30. (금)

시화－철쭉

시조－갈매기

시목－느티나무

고 시

○ 삼척시 고시 제69호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 2

공 고

○ 삼척시 공고 제519호 강원대학교 도계캠퍼스 학사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안) ---------- 5

○ 삼척시 공고 제520호 삼척시 산불방지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10

공람									

발행 : 문화공보실 (전화 : 570－3221, FAX : 570－3132)

삼척시 고시 제2017 - 69호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제24조,제25조에 의거 우리시 건물등의 신축 등의 사유로 부여하는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 06. 30.

삼 척 시 장

○ 도로명주소 부여 : 강원도 삼척시 가곡면 가곡천로 1028 외7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비 고
	주소	고시일	사유	고시일	부여사유	
(별지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삼척시청 민원봉사과(☎570-3946～9)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7. 06. 30.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순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비고
		주 소	고시일	사유	고시일	부여 사유	
1	강원도 삼척시 가곡면 오저리 608	강원도 삼척시 가곡면 가곡천로 1028	20170630	건물신축	20090626	지형지물(가곡천) 명칭활용	
2	강원도 삼척시 미로면 하거노리 594	강원도 삼척시 미로면 두타로 2011-9	20170630	건물신축	20090626	지형지물(두타산) 명칭활용	
3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장호리 264-2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삼척로 2081-7	20170630	건물신축	20090626	구7번국도연결 구간으로기존 도로명활용	
4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용화리 210-4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삼척로 2197-25	20170630	건물신축	20090626	구7번국도연결 구간으로기존 도로명활용	
5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홍전리 168-7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나한정안길 6	20170630	건물신축	20090626	지역지명(지형 지물)활용	
6	강원도 삼척시 남양동 160-10	강원도 삼척시 남산길 21 (남양동)	20170630	건물신축	20090626	지형지물(남산) 명칭활용(기존 도로명)	
7	강원도 삼척시 미로면 동산리 10	강원도 삼척시 미로면 동산길 144	20170630	건물신축	20090626	행정구역명사용	
8	강원도 삼척시 하장면 중봉리 331	강원도 삼척시 하장면 중봉당골길 1127-31	20170630	건물신축	20090626	행정구역, 지형지물 복합 활용	
9		이	하	여	백		
10							

도로명주소 부여 내역

구분	순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사유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계	8 건					
부여	1	강원도 삼척시 가곡면 오저리 608	강원도 삼척시 가곡면 가곡천로 1028	20170630	건물신축	20090626	지형지물(가곡천)명칭활용	
부여	2	강원도 삼척시 미로면 하거노리 594	강원도 삼척시 미로면 두타로 2011-9	20170630	건물신축	20090626	지형지물(두타산)명칭활용	
부여	3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장호리 264-2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삼척로 2081-7	20170630	건물신축	20090626	구7번국도연결구간으로 기존도로명활용	
부여	4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용화리 210-4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삼척로 2197-25	20170630	건물신축	20090626	구7번국도연결구간으로 기존도로명활용	
부여	5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홍전리 168-7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나한정안길 6	20170630	건물신축	20090626	지역지명(지형지물)활용	
부여	6	강원도 삼척시 남양동 160-10	강원도 삼척시 남산길 21 (남양동)	20170630	건물신축	20090626	지형지물(남산)명칭활용 (기존도로명)	
부여	7	강원도 삼척시 미로면 동산리 10	강원도 삼척시 미로면 동산길 144	20170630	건물신축	20090626	행정구역명사용	
부여	8	강원도 삼척시 하장면 중봉리 331	강원도 삼척시 하장면 중봉당골길 1127-31	20170630	건물신축	20090626	행정구역, 지형지물(당골) 복합 활용	

삼척시 공고 제2017 - 519호

『강원대학교 도계캠퍼스 학사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삼척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26일

삼 척 시 장

강원대학교 도계캠퍼스 학사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안)

1. 개정이유

○ 2025년 폐특법 종료에 따른 기간 연장이 불확실함을 가정하고, 향후 8년이 도계캠퍼스의 자력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임을 인식하여 이에 학사경비보조금의 안정적인 지원으로 캠퍼스와 지역의 장기적인 발전목표 설정과 함께 급격한 환경변화에 대비하고

○ 학사경비보조금 보조사업 당사자가 삼척시 학사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위원으로 일부 구성됨으로써 중앙부처의 개선권고 의견 및 보조경비 신청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한 경우 관계자 등의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현행조례에 명시하고 있으므로 이를 폐광지역대표자 민간위원으로 대체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보조경비의 범위」 확대(안 제2조제4호부터 제5호까지를 신설)

4. 캠퍼스시설 운영유지

5. 기타 조례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제5조에 의하여 심의를 득한 사업

○ 「위원회 구성」 위원교체 (안 제6조제3항 개정)

캠퍼스 과장급 이상 공무원 3명 삭제 : 지역대표자 4명 ⇒ 7명으로 조정

3. 의견제출

○ 이 개정 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7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삼척시장(참조 자원개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제출자의 성명(기관 · 단체의 경우 기관 ·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참고사항) 등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제출처 : 삼척시 중앙로 296 삼척시청 자원개발과(우 25914)
- 연락처 : 삼척시청 자원개발과 개발기획팀 (033-570-4053)
- F A X : 033- 570-3187

4. 그 밖의 사항

○ 이 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samcheok.go.kr) 입법/공고/고시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붙임 1. 강원대학교 도계캠퍼스 학사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2. 검토의견서 1부.

강원대학교 도계캠퍼스 학사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강원대학교 도계캠퍼스 학사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부터 제5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캠퍼스시설 운영유지
5. 기타 조례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제5조에 의하여 심의를 득한 사업

제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캠퍼스 과장급 이상 공무원 3명을 삭제하고 지역대표자 4명을 7명으로 조정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보조경비의 범위) 강원대학교 도계캠퍼스(이하 "캠퍼스"라 한다) 학사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할 수 있는 범위(이하 "보조경비"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략) 2. (생략) 3. (생략) **4. <신설>** **5. <신설>**	**제2조(보조경비의 범위)** ----------. 1. (현행 1호와 같음) 2. (현행 2호와 같음) 3. (현행 3호와 같음) **4. 캠퍼스시설 운영유지** **5. 기타 조례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제5조에 의하여 심의를 득한 사업**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생략) ② (생략) ③ 위원은 삼척시 과장급이상 공무원 2명, 시의회 의원 3명, **캠퍼스 과장급 이상 공무원 3명, 지역대표자 4명**으로 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생략)	**제6조(위원회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 **지역대표자 7명**으로 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현행과 같음)

입법예고안 검토의견서

▣ 조례 · 규칙 제명 :
▣ 의견제출자 :

개 정 안	검 토 의 견	
	수정안	검토사유

삼척시 공고 제2017 - 520호

삼척시 산불방지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면서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27일

삼 척 시 장

삼척시 산불방지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산불예방·진화활동의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시민이 동참하는 산불방지 대책을 추진함으로서 산불로부터 안전한 삼척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 (안 제1조, 안 제2조)

나. 적용범위 및 지원에 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3조, 안 4조)

다. 산불방지 활동과 활동단체 또는 개인에 대한 비용 또는 물품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및 개인은 2017년 5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삼척시장 (참조:산림과, 전화:570-3867, 팩스:570-3143, 담당자:이선우)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붙 임 : 삼척시 산불방지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삼척시 조례 제 호

삼척시 산불방지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보호법」 제33조에 따라 삼척시의 산림을 보호하기 위한 산불방지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불"이란 산림이나 산림에 잇닿은 지역의 나무·풀·낙엽 등이 인위적으로나 자연적으로 발생한 불에 타는 것을 말한다.
2. "산불조심기간"이란 『산림보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삼척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이 계절별로 산불위험지수가 높아 산불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기간으로 정한 기간을 말한다.
3. "산불방지활동"이란 산불을 예방하고 진화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산불방지단체 또는 개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가. 「강원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의용소방대
   나. 동 지역 중 산림이 있고, 해당 동 주민센터에서 산불방지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나, 의용소방대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의 자율방범대
   다. 리·통장
   라. 그 밖에 설립의 목적과 취지가 산림자원의 보호와 육성인 단체로서, 실제 산불예방 및 진화, 인명구조 활동 등 산불방지활동이 가능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단체

제3조(적용범위) 산불방지활동의 지원에 관하여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4조(책무) 시장은 「산림보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산불방지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보상금등 지원) 시장은 법 제33조에 따라 산불방지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산불조심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는 산불방지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보상금 또는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산불예방 및 감시활동
2. 산불 진화활동
3. 그 밖의 산불방지에 필요한 활동

제6조(보상금의 관리) 제5조 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른 보상금등의 지급대상·지급액·지급조건·지급시기 등에 관한 사항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이 정한다.

제7조(표창) 시장은 산불방지활동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개인·단체에게 표창할 수 있다.

제8조(산불종사원 지원) 시장은 산불방지활동에 참여한 산불종사원들에게 소정의 산불방지 홍보 및 위문품을 제작 배부할 수 있다.

제9조(산불홍보물 제작 배부) 시장은 산불방지를 위한 캠페인 등 홍보활동을 위하여 소정의 산불방지 홍보물을 제작 배부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입법예고안 검토의견서

▣ 조례 제명 : 삼척시 산불방지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의견제출자 :

제 정 안	검 토 의 견	
	수정안	검토사유